(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8/2568호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 및 투자 촉진 방안

사업자가 태국 내에서 생산 기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 상황으로 인한 피해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투자위원회는 불기 2520년(1977년) 투자촉진법 제16조 및 개정안에 의거하여 다음 내용을 고시한다.

1. 캄보디아에서 생산 기지 이전 시 중고 기계 사용 기준
   1.1 제조 연도부터 수입 연도까지의 기간이 10년 이하인 중고 기계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허가되고, 법인세 면제 대상 투자금액으로 인정되며,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해당 중고기계는 기계 효율성, 환경 영향, 에너지 사용, 적정가격 평가 등에 관하여 공인 기관(recognized institution)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1.2 제조 연도부터 수입 연도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중고 기계
   프로젝트에서 사용은 허가되나, 법인세 면제를 위한 투자금액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다만 수입 관세는 면제된다. 해당 중고기계는 기계 효율성, 환경 영향, 에너지 사용 등에 관하여 공인 기관(recognized institution)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조건
   2.1 캄보디아에서 생산 기지 이전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
   2.2 2026년 마지막 근무일 내로 투자촉진 신청서 또는 프로젝트 수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권리 및 혜택(인센티브)
   3.1 신규 투자 촉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전체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경우)
      3.1.1 기계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3.1.2 촉진 신청서 제출일 당시 시행하고 있는 관련된 투자위원회 고시에 따른 기타 인센티브 제공
   3.2 프로젝트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기존 촉진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특정 기계만 이전하는 경우)
      3.2.1 기존에 승인된 기계 수입 기간이 만료된 경우, 프로젝트 수정 신청일로부터 1년간 캄보디아에서 이전되는 기계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
      3.2.2 완전 조업을 한 경우, 생산능력 확대 및 법인세 면제액 조정은 불가하다.

이 고시는 202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일 2025년 8월 15일

Pichai Chunhavajira

(Mr. Pichai Chunhavajira)
부총리
투자위원회 의장